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혁신제품 지원센터 및 수탁기관의
재지정·재위탁 금지 기간 명시〉

■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11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혁신제품 지원센터 및 수탁기관의 재지정·재위탁 금지 기간 명시 (안 제27조의2제4항 및 제33조제7항)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민규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1. 8.

다. 회 부 일 : 2026. 1.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마찬가지로 시설관리 등의 위탁을 받은 기관도 부정행위 등으로 위탁이 취소된 이후 재위탁을 신청하고 지정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할 실질적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위탁)을 받은 혁신제품 지원센터와 수탁기관의 경우 그 지정(위탁)을 취소하면서 취소 후 일정 기간 재지정(재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두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4항 및 제33조제7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혁신제품 지원센터 및 수탁기관의 재지정·재위탁 금지 기간 명시 (안 제27조의2제4항 및 제33조제7항)

현행	개정안
○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 <u><신설></u> ○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 취소 <u><신설></u>	○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취소 및 2년 이내 재지정 금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 - <u>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지정 금지</u> ○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 취소 - <u>위탁이 취소된 수탁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탁 금지</u>

현행법¹⁾은 조달청장이 혁신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혁신제품 지원

1) 제27조의2(혁신제품 지원센터) ① 조달청장은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발굴과 추천
2.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대상 교육·홍보 및 컨설팅
3.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조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4.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해외 사례 조사

② 조달청장은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④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지원센터가 그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를 지정할 수 있고, 조달청 소관 시설의 관리 등을 위해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이하 “수탁기관”이라 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및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지정 또는 위탁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혁신조달 지원센터 주요 업무]

구분	업무 내용
정책연구	제도개선 등 정책수립, 성과관리
기업지원	혁신제품 발굴, 컨설팅, 사후관리
지정지원	신청서류 검토, 규격 확인 등 지원
해외진출	해외진출 지원프로그램 코디네이팅

자료: 조달청

- 는 조달특별회계에 속하는 창고, 야적장(野積場), 그 밖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제3조 각 호의 사업, 제18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제19조제1항의 업무 및 제20조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의 업무, 제19조제1항의 업무 및 제20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 ② 조달청장이나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행정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조달물자 외의 물자를 수탁(受託)하여 그 시설에서 보관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
- ③ 조달청장은 제1항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특별회계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수탁기관은 해당 업무의 수행에 관련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⑤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품질관리업무 수행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⑥ 조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업무의 수탁기관의 장이 위탁 취소를 요청한 경우
 3. 관계 기관으로부터 검사분야 공인기관 인정이 전부 취소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
 5. 그 밖에 업무의 신뢰성 또는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⑦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지정·관리·감독, 수탁기관의 검사업무 정지 및 위탁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현재 (사)한국조달연구원이 혁신제품지원센터로 지정²⁾되어 혁신수요 및 혁신제품 발굴, 기업컨설팅, 정책연구, 해외진출 지원 등 혁신조달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위탁이 취소된 기관이 다시 지정 또는 위탁을 받을 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결격사유 규정이 부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던 기관이 단기간 내에 다시 지정·위탁을 받고자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 및 재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달 행정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동 개정안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지정·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재지정·재위탁을 차단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며, 제한 기간도 다른 법률에 비해 과도해 보이지 않으므로 수용한다는 입장임.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조달 행정 지원 업무의 공정성 및 대외적 신뢰도 제고에 기여

2) 지정기간 2025.1.1. ~ 2027.12.31.

함. 지원센터 및 시설관리 수탁기관은 혁신제품 발굴과 공공시설 관리 등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므로 운영 주체의 도덕성과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임. 개정안은 부정행위 기관의 시장 재진입을 일정 기간 제한함으로써 지정 및 위탁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행정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둘째, 지정 취소 후 재지정 제한을 두고 있는 다수의 입법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공공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년의 결격 기간을 두고 있음. 이는 행정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혁신제품 지원과 시설관리 위탁 업무에도 이를 도입하는 것은 지원센터 및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임.

[지정 취소 후 재지정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 현황]

법률명	조문내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희귀질환관리법」	제14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등)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희귀질환전문기관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희귀질환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원센터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 지정의 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개정안은 제재 대상을 ‘지정·위탁이 취소된 기관’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 위반 주체인 대표자나 임원에 의한 우회 등록을 방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철도안전법」은 안전성검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면서, 그 기관의 설립·운영자 및 임원이 설

립·운영하는 검사기관까지 재지정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해양교육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하면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실질적 지배주주의 명의 대여나 신규 법인 설립을 통한 변칙적 시장 재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음.

[재지정 제한 대상을 ‘대표자 및 임원’으로 확대하고 있는 입법례 현황]

법률명	조문내용
「철도안전법」	제15조의2(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운전적성검사기관이나 그 기관의 설립·운영자 및 임원이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설립·운영하는 검사기관을 운전적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지원센터 지정 또는 위탁이 취소된 기관에 대한 재지정 제한이 기관 명의에만 국한될 경우, 동일한 인적 구성에 명의만을 변경하여 재신청하는 행위를 막기 어려우므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한 대상을 해당 기관의 대표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혁신제품 지원센터) ① ~ ③ (생략) <u><신설></u> ④ ~ ⑥ (생략)	제27조의2(혁신제품 지원센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원센터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해당 지원센터로 재지정받을 수 없다.
제33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① ~ ⑥ (생략) <u><신설></u> ⑦ (생략)	제33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제1호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기관은 그 위탁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해당 수탁기관으로 재위탁받을 수 없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문의처

02)6788-5152